



2019,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B책형)

총 평

<<총평>>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은 구체적이고 지엽적인 법령을 묻는 문제가 여러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령을 세심하게 학습하지 않은 수험생의 경우 체감난이도는 높았을 것을 생각됩니다. 늘 강조하는 바이지만 지방자치론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세심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고 좋은 결과로 귀결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출제영역

지방행정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 기관구성 · 사무	지방재정	주민참여	정부 간 관계 및 광역행정
3	9	5	1	2

* 출제경향

기본 개념	이론 이해	제도 이해	법령 문제	기타(학자, 연역, 사례 등)
2	1	1	15	1

01

지방자치의 원리로서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자치권의 성질을 국가로부터 수탁, 전래된 것으로 본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엄격히 구분하려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의 하부기관으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며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조한다.

정답 ④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며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조하는 반면, 단체자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중점을 두며 자치권 배분을 강조한다.

오답정리

- ① 단체자치는 자치권의 성질을 국가로부터 수탁, 전래된 것으로 본다(전래권설).
- ②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엄격히 구분하려 한다.
- ③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의 하부기관으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한다.

핵심체크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비교

구분	주민자치	단체자치
의미	정치적 의미(민주주의의 원리)	법률적 의미(지방분권의 원리)
국가	영국·미국	독일·프랑스
자치권의 인식	자연적·천부적 권리	국가에서 전래된 권리
자치권의 범위	광범위함	협소함
자치권의 중점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 (주민참여에 초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사무배분에 초점)
권한부여방식	개별적 수권주의	포괄적 수권주의
지방정부 구성형태	기관통합형(의회우월형)	기관대립형(집행기관우월형)
사무구분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미구분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구분
조세제도	독립세(자치단체가 과세주체)	부가세(국가가 과세주체)
중앙과 지방의 관계	기능적 상호협력관계	권력적 감독관계
자치단체의 지위	순수한 자치단체	이중적 지위(자치단체+일선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많음	적음
통제	주민통제(아래로부터의 통제)	중앙통제(위로부터의 통제)
민주주의와 관계	상관관계 인정설	상관관계 부정설
국가공무원	없음	있음
위법통제	입법적·사법적 통제	행정적 통제

02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 제117조에서 의회의 조직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② 간접민주주의에 기반하여 구성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 ③ 기관대립형의 기관 구성에서 의결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 ④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행정사무를 견제하는 감시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정답 ④ 「헌법」 제118조 제2항은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법령 「헌법」

제117조

-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03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변경은 법률로 정한다.
- ③ 행정 수요 및 서비스 형평성 요구의 증가는 구역의 광역화를 추구하게 한다.
- ④ 1990년대에는 시·군 통합이 이루어졌고 해당 자치단체의 구역이 확대되었다.

정답 ②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체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등

구분	내용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칭 · 구역변경 · 폐지 · 분합 · 합체 :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 실시 후 법률로• 경계변경 및 한자 명칭의 변경 : 대통령령으로
행정구와 읍 · 면 ·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지 · 분합 · 합체 :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례로• 명칭 및 구역변경 :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광역자치단체 장에게 보고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칭 · 구역변경 · 폐지 · 분합 · 합체 : 조례로
사무소의 소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경 또는 새로 설정 : 조례로

04

대도시의 자치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특별시는 조직운영상의 특례와 달리 인사 및 서훈과 관련하여서는 특례를 인정받지 않고 있다.
- ③ 인구 100만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부시장을 3명으로 한다.
- ④ 특별시는 관할 구역 안에 자치구와 군을 두고 있다.

정답 ①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행정구)를 둘 수 있다.

오답정리

- ② 특별시는 조직운영상의 특례와 인사 및 서훈과 관련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 ③ 인구 100만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부시장을 2명으로 한다.
- ④ 특별시는 관할 구역 안에 자치구를 두며, 군을 두고 있지 않다.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 - 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 ⑤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소속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행사하며,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서울특별시장이 된다.
- ⑦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敍勳)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05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단체위임사무를 처리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의 일선 지방행정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 ② 지방공무원의 정원과 인건비는 행정안전부령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4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근거하여 대학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정답 ④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함),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대학 등),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13조).

오답정리

- ①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의 일선 지방행정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 ②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지방자치법」 제112조 2항).
- ③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지방자치법」 제112조 6항).

06

티부 가설(Tiebout Hypothesi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들은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으로 이동한다고 본다.
- ② 외부효과의 배제, 복수의 지방정부, 완전한 정보 등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 ③ ‘복지의 자석효과’를 주장한 피터슨(Peterson)의 도시한계론의 영향을 받았다.
- ④ 분권적 배분체제에서는 공공재 공급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새뮤얼슨(Samuelson)의 이론을 반박한다.

정답 ③ 피터슨(Peterson)은 “도시한계(City Limits)”에서 ‘복지의 자석효과’를 주장하였다. ‘복지의 자석효과’는 티부 가설(Tiebout Hypothesis)의 영향을 받았다.

<<참고>> 피터슨(Peterson)의 “도시한계(City Limits)와 복지의 자석효과”

- ① 복지(재분배)정책을 충실히 실시하는 지방정부의 경우 이미 살고 있는 저소득자층의 지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타 지역으로부터 복지정책을 기대하는 저소득층의 유입을 불러온다(복지정책의 자석효과). 반대로 복지(재분배)정책으로 편익보다 부담이 커지는 고소득층은 이러한 정책을 지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호와 더 일치하는 지방정부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고소득층의 유출이 발생한다.
- ② 고소득층이 이주하게 되는 지방정부는 복지(재분배)정책에 소홀한 모습을 보인다. 이는 복지(재분배)정책에 소홀해야 고소득층(세금부담 능력이 높은 신주민)의 유입을 가져와 지방정부의 이익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 ③ 결론적으로 피터슨(Peterson)은 이와 같은 이유로 지방정부가 복지정책을 열심히 추구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핵심체크 티부 가설(Tiebout Hypothesis)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수의 지방정부로 구성된 분권화체제에서 완전경쟁시장의 가정 하에 주민들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마음에 드는 재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방정부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이동하는 ‘발로 하는 투표(vote by foot)’가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을 유치하기 위한 지방정부 간 경쟁으로 지방정부의 경영이 보다 건전해지고 효율화된다 고 보는 이론• 효율성 측면에서 지방자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재정논리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엘슨의 이론에 대한 반론 : ‘공공재는 분권적 배분체제가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중앙집권적·일방적 과정을 통하여 공급되어야 한다’는 사무엘슨의 이론에 대한 반론
기본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전경쟁시장의 가정 : ① 다수의 지방정부 존재, ② 완전한 정보, ③ 지역 간 자유로운 이동가능성 및 완전한 이동(거래비용=0), ④ 외부효과 부존재, ⑤ 최소한 한 개 이상의 고정적 생산요소 존재, ⑥ 국고보조금 부재, ⑦ 단위당 평균비용 동일(규모수의 불변의 원리), ⑧ 최적 규모 추구(최저평균비용으로 지방 공공재를 생산할 수 있는 인구 규모 추구), ⑨ 지방정부의 재원 – 재산세로 충당, ⑩ 배당수입에 의한 소득 등
결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정부는 적정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효율적인 자원배분(파레토 최적)• 유사한 선호를 가진 사람들의 공간적 집적 현상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간 이질성 심화로 인한 형평성 저하• 주민요구에 대한 대응성 불고려 – 공공재의 효율적인 배분만 강조• 비현실적인 완전경쟁시장의 가정
정책적 함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정부의 개입을 통한 인위적인 행정구역 통합이나 보조금의 확대는 효율성이라는 티부가설의 효용을 상실하게 하며, 중앙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은 형평성 저하라는 티부가설의 한계를 야기•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과 생활의 광역화는 정보의 불완전성을 완화하고 이전비용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티부가설의 설득력을 높임

07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21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사항이 재의결된 경우, 재의결된 사항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지방의회가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의회는 부단체장 임명에 대해 인사청문회 개최와 동의권을 가진다.

정답 ③ 지방의회가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61조 2항).

오답정리

-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한다(「지방자치법」 제41조 1항).
-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사항이 재의결된 경우,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07조 3항).
- ④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지방의회는 부단체장 임명에 대해 인사청문회 개최와 동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지방자치법」 제110조 2항).

08

지방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될 수 있으며, 임기는 3년이고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 ③ 9급 지방공무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 9개월간 시보로 임용한다.
- ④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설치한다.

정답 ②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등은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지방공무원법」 제7조).

오답정리

- ①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지방공무원법」 제10조 3항).
- ③ 5급 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 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한다(「지방공무원법」 제28조).
- ④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시·도)에만 설치한다(「지방공무원법」 제13조).

09

『지방자치법』상 도농 복합형태의 시(市)가 될 수 있는 지역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인구 5만의 시와 인구 3만의 군을 통합한 지역
- ㄴ. 인구 4만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 ㄷ. 인구 1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3개 지역의 인구가 4만이며, 총인구가 10만인 군

- ① ㄱ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정답 ① 위의 보기에서 인구 5만의 시와 인구 3만의 군을 통합한 지역(ㄱ)만 도농 복합형태의 시가 될 수 있다.

오답정리

- ㄴ.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은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 ㄷ.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으로, 인구가 15만인 군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7조

- ①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함)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10

지방자치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1949년 8월 15일에 제1차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 ② 1956년에 시·읍·면장의 직선제가 실시되었다.
- ③ 1991년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였다.
- ④ 2000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직할시의 명칭을 광역시로 변경하였다.

정답 ② 1956년 제2차 지방선거(제1공화국)에서 최초로 시·읍·면장의 직선제가 실시되었다.

오답정리

- ① 1949년 8월 15일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으나 1952년(제1공화국)에 가서야 제1차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 ③ 1995년에 실시된 지방선거(김영삼 정부)에서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최초로 동시에 선출하였다.
- ④ 1994년 「지방자치법」 개정(김영삼 정부)으로 직할시의 명칭을 광역시로 변경하였다.

핵심체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1공화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헌헌법에 근거해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 정부 직할로 서울특별시와 도를, 도의 관할로 시·읍·면을 둠 • 정국불안과 한국전쟁으로 1952년에서야 지방의회 구성(최초의 지방의회 선거) • 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장·읍장·면장은 지방의회에서 간선-직선-임명직 순으로 제도 변화 •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 및 의회 해산권 인정(인정하지 않은 시기도 있었음)
제2공화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0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형 지방자치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주민직선(완전한 지방자치)
제3공화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 : 읍·면 자치제 폐지와 군 자치제 실시, 지방의회 해산, 단체장 임명제 (지방자치 전면 중단) • 「헌법」부칙에 '최초의 지방의회 구성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법률을 제정하지 않아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지 않음
제4공화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부칙에 '지방의회는 조국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지 않음
제5공화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부칙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구성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지 않음
노태우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공화국 「헌법」부칙의 지방의회 구성 유보조항 삭제(지방자치 실시 기반 마련) • 특별시·직할시·도(광역)와 시·군·자치구(기초)를 자치계층으로 지정 • 1990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주민직선을 규정 •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실시하였으나, 자치단체장 선거는 실시하지 않음
김영삼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지방의회 의원 및 자치단체장 주민직선을 규정 • 지방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동시 직접 선거(최초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김대중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先) 지방 육성 - 후(後) 지방 자율화 정책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노무현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대통령 소속) 설치
이명박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지방분권촉진위원회(대통령 소속) 설치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대통령 소속) 설치
박근혜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지방자치발전위원회(대통령 소속) 설치
문재인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 - 자치분권위원회(대통령 소속) 설치

11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려는 목적이 있다.
- ② 보통교부세는 사용 목적과 용도가 정해져 있는 특정 재원이다.
- ③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국고보조금은 지방비 부담을 초래하여 지방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답 ② 보통교부세는 사용 목적과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는 일반재원이다.

핵심체크 지방재정교부제도

구 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보통 교부세	특별 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소방안전 교부세	장려적 보조금	부담금	교부금	
지급 사유	지방정부의 재정적 결함	특별한 지역 적 현안 등	종토세 폐지 로 인한 세수 감소분 보전	자치단체의 소 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	장려가 필요한 자치사무	단체위임 사무	기관위임 사무	광역정부가 기초정부의 재정적 결함 을 보완
교부 기준	기준재정수 요액 – 기준 재정수입액 × 조정률	특정 사유발 생시 일정기 준에 의해 지급	재정여건이 나 지방세 운 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 급	소방 및 안전시 설 현황 및 투자 소요 등을 고려 하여 지급	필요 상당액	사업비 일부	사업비 전부	재정력 격차 를 고려하여 지급
용도	일반재원	특정재원	일반재원	특정재원	특정재원	특정재원	특정재원	일반재원
재원	내국세 총액 의 19.24% 중 97%	내국세 총액 의 19.24% 중 3%	종합부동산 세 전액	담배에 부과되 는 개별소비세 의 20%	국가예산	국가예산	국가예산	시·군(지방 소비세액의 27%), 자치 구(보통세수 입의 일정액)
통제	약함	강함	약함	강함	강함	강함	강함	약함

12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할 수 있는 세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 재산세, 등록면허세
- ② 제주특별자치도 – 지방소득세, 재산세
- ③ 충청남도 공주시 –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 ④ 울산광역시 울주군 –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정답 ④ 광역시 안에 군을 두고 있는 경우 도세를 광역시세로 본다. 따라서 울주군의 세목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이다.

핵심체크 지방세

구 분	특별시·광역시 / 자치구		도 / 시·군	
	특별시·광역시세	자치구세	도 세	시·군세
보통세	주민세, 취득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13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의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분쟁조정을 위해 시·도에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분쟁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분쟁이 생기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조정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면, 당사자는 결정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지며 불이행 시에는 이행명령과 대집행이 가능하다.

정답 ③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48조 1항).

핵심체크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제도

행안부 소속 분쟁조정 위원회	조정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에 의한 조정 : 자치단체 상호 간 다툼이 생기면 행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분쟁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직권에 의한 조정 :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행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음
	조정	행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분쟁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행안부에 설치)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시·도에 설치)의 의결에 따라 조정해야 함
	조정 의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에 대하여 결정을 하면 서면으로 자체 없이 관계 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단체장은 그 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해야 함• 행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조정결정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하면 그 자치단체에 대하여 이행을 명령하고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 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현법재판소		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현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14

주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 ② 2004년 「주민투표법」이 제정된 이후 실제로 주민투표가 실시된 적이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 ④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주민투표법」 제9조 5항).

핵심체크 주민투표제도

의의	자치단체의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 제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임의사항). •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주민투표법」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주민투표 권리	19세 이상의 주민 중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① 그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주민투표 대상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중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사항 •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 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주민투표 청구·요구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 19세 이상의 주민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단체장에게 청구 • 지방의회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단체장에게 청구 • 단체장 :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실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주민투표 요구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치단체의 폐지·분합 또는 구역변경, 주요 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단체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음(국가정책에 대한 것이므로 반드시 투표에 부쳐야 하는 것도 아니고 투표결과에 대한 구속력도 없음) 	
발의권자	단체장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투표를 발의(실시)할 수 있음	
투표형식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투표권자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 • 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함 	
투표결과의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장 및 지방의회는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사항은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음 	

불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의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민투표권자는 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선관위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기초는 시·도선관위에, 광역은 중앙선관위에 각각 소청할 수 있음 • 소청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관할선관위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광역은 대법원에, 기초는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재투표	단체장은 주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무효로 된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해야 함

15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공기업의 유형에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이 있다.
- ② 지방공사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다.
- ③ 상·하수도사업을 담당하는 지방공기업은 자치단체 전액출자형 지방공사에 해당한다.
- ④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모두 법인으로 설립된다.

정답 ③ 상·하수도사업을 담당하는 지방공기업은 지방직영기업에 해당한다(「지방공기업법」 제2조).

핵심체크 지방공기업

의의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
대상사업	①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 제외), ② 공업용수도사업, ③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④ 자동차운송사업, ⑤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만 해당), ⑥ 하수도사업, ⑦ 주택사업, ⑧ 토지개발사업 등
직영 기업	의의 자치단체가 자신의 조직과 직원으로 경영하는 기업(정부기업)
	인사 • 관리자 : 해당 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단체장이 임명(임기제도 가능) • 구성원 : 당해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재무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해당 기업의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
	기타 • 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함 • 지방직영기업의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유형 간접 경영	의의 자치단체가 조례로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법인체 기업)
	유형 • 지방공단 : 자치단체가 전액 출연 • 지방공사 : 자치단체가 전액 출자, 다만 자본금의 1/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 포함)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음 • 주식회사 및 재단법인 : 자치단체가 50% 미만 출자 또는 출연
	인사 • 임원 : 사장(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단체장이 임면 • 구성원 : 회사원
	재무 독립채산제로 운영(예산은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
	기타 • 공사 또는 공단은 법인으로 함 • 단체장은 사장(이사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해야 함 • 상호 규약을 정해 다른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공사 또는 공단을 설립할 수 있음
경영위탁	계약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사무를 민간기업 등에 위탁하여 수행(아웃소싱)
경영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안부장관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다만, 행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체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음 • 행안부장관은 경영평가를 한 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

16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관계는 대등한 것이 원칙이지만, 법령 규정으로 감독 관계가 성립하기도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의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 한다.
- ③ 시·도지사 전국협의체를 설립한 때에는 그 협의체의 대표자는 국무총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

정답 ③ 협의체나 연합체를 설립한 때에는 그 협의체의 대표자는 자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65조 3항).

핵심체크 우리나라의 광역행정방식

행정 협의회	구성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가장 일반적인 방식).
	구속력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위반시 제재조치가 없어 실질적 구속력은 없음).
	문제점	① 과세권이나 집행권이 없음, ② 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지방의회의 참여가 배제됨, ③ 협의사항에 대한 기속력 결여, ④ 집행기관이 없는 단순한 협의체에 불과함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의설립 :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안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일부사무조합).• 강제설립 : 행안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면 조합의 설립이나 해산 또는 규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합은 법인으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이며, 조합의 명의로 공동사무 처리, 행안부장관의 승인 하에 지방채 발행 등 독자적 재산 보유(재정권), 자체직원 보유(인사권), 소송의 당사자적격 등을 지님• 조합의 구성원은 주민이 아닌 자치단체이므로 주민에 대한 과세권은 없음
사무위탁		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법적성질 : 공법상 계약).
협의체와 연합체	협의체	단체장 또는 의회의장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시·도지사, 시·도의회의 의장,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연합체	단체장 또는 의회의장은 시·도지사, 시·도의회의 의장,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의 전국적 협의체가 모두 참가하는 자치단체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

17

지방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 의원정수는 6인이다.
- ②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 ③ 2002년부터 모든 지방선거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이 허용되었다.
- ④ 외국인에게는 영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주어진다.

정답 ②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47조 3항).

오답정리

- ①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공직선거법」 제23조 2항).
- ③ 현재까지 교육감 선거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 ④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주어진다(「공직선거법」 제15조 2항).

18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세원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에 도입하였다.
- ② 2018년 기준 지방소비세는 지방세에서 취득세보다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③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수의 20 %를 세원으로 한다.
- ④ 시·도별 배분에 있어 권역별로 민간 최종 소비 지출 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한다.

정답 ③ 지방소비세는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1%를 세원으로 한다.

핵심체크 지방세의 주요 쟁점

주요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과세나 소비과세가 아닌 재산과세 중심(안정성은 높으나 신장성과 탄력성은 낮음)• 재산보유과세보다 재산거래과세의 비중이 높음• 재산보유과세는 주로 기초의 세목으로, 재산거래과세는 주로 광역의 세목으로 구성• 광역시 안에 군을 두고 있는 경우 도세를 광역시세로 봄• 광역시의 경우에는 주민세(재산분, 균등분, 종업원분) 중 재산분과 종업원분은 구세로 함• 분리과세가 원칙이나 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의 재산세는 공동과세함(특별시분[50%]과 자치구분[50%]으로 구분하고, 특별시분 전액을 자치구에 균등분배)•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1%를 특별시·광역시세이면서 도세인 지방소비세로 전환• 특별시·광역시세이면서 시·군세인 지방소득세 신설• 과거 지방세인 경주·마권세를 레저세로 명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원 미약 : 국세(약 80%), 지방세(약 20%)• 세원의 지역적 편재 : 세원이 대도시 중심으로 편재(보편성의 원칙에 위배)• 지방세의 신장성 저조 : 재산과세 및 정액세 중심으로 구성되어 세수의 신장성 저조• 독자적 과세 주권 결여 : 법정외 세목 설치 금지로 과세 주권 결여• 획일적인 세제 운영 : 조세법률주의로 인해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음
문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와 지방세 간 합리적 조정 : 소득과세와 소비과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 신세원 개발 : 각종 부담금의 지방세원화(환경부담금의 지방환경세로 전환 등)• 법정외 세목 설치 : 지방세조례주의 채택• 탄력세율제도 활용 : 법령으로 정한 탄력세율의 범위 내에서 각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세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세수 확보에 신축성을 부여한 제도(조례로 정하는 탄력세율 세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적용제외 – 레저세, 지방소비세)

19

지방재정의 건전성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부채는 통합부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재정위기단체 지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④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②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지방재정법 제44조의 2 ②항).

핵심체크 지방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제도

재정 운용에 관한 보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결산, 출자, 통합부채, 우발부채, 그 밖의 재정 상황에 관한 재정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를 거쳐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재정분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해야 함• 행안부장관은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중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위험 수준을 점검해야 함
재정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안부장관은 다음의 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 ①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치단체 ② 재정점검 결과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자치단체
재정위기단체 와 재정주의단체의 지정·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안부장관은 재정분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자치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재정의 건전성 또는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자치단체)로 지정할 수 있음• 행안부장관은 지정된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재정위기단체 등의 의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해야 함)•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재정건전화계획을 기초로 해야 함• 행안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음•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상황을 매년 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해야 함
재정위기단체의 지방채 발행 제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행안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음•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행안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행안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 결과가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그 밖의 재정상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음
지방재정분석에 따른 조치	행안부장관은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음

20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②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③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④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정답 ④ 「지방자치법」상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은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속한다.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①)는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에 속하며,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②)은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에 속하고,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③)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에 속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예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①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②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③ 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④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⑤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⑥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⑦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⑧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⑨ 공유재산관리, ⑩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⑪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①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②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③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④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⑤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⑥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⑦ 묘지·화장장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⑧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⑨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⑩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① 소류지·보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②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③ 농업자재의 관리, ④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⑤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⑥ 농가 부업의 장려, ⑦ 공유림 관리, ⑧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⑨ 가축전염병 예방, ⑩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⑪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⑫ 중소기업의 육성, ⑬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⑭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① 지역개발사업, ②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③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④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 ⑤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⑥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⑦ 자연보호활동, ⑧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⑨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⑩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⑪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⑫ 지방 케도사업의 경영, ⑬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⑭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⑮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①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②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③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④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⑤ 지방문화·예술 단체의 육성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①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 포함)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②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